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5월 14일

나. 제출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7년 5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07년 5월 25일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임 경 도

나. 제안이유

‘04. 8. 19 구미지역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미부패방지 시민 네트워크”를 발족한 이후 ‘06. 5. 19 “청립구미 협약식”시 체결한 9개 항목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의 협력수준을 높이고 협약의 이행을 점검 평가하며, 협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체계를 구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청렴구미만들기”란 구미시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로 가꾸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협의회 기능(안 제3조)
 - 『청렴구미 만들기』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 『청렴구미 만들기』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청렴구미 만들기』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사항
-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지역상공인)
 -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위원의 해촉(안 제6조)
 - 임기중 사망,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상 손상 등
- 분과위원회(안 제7조)
 - 협의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의결사항의 처리(안 제9조)
 -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
⇒ 시장은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안 제10조)
 -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한 경우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참고사항

- 국가청렴위 민간협력팀-176(2006. 4. 5)호의 「2006년 상반기 지역순회 부패방지활동 추진계획」지침과 관련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수 영

○ 본 제정 조례안은

- 국가청렴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지역순회 부패방지활동 추진계획」 지침 등을 참고
- 민관이 협력하여 구미시의 청렴성을 높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 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제정 조례의 구성은 총 13조로 규정하였음

○ 주요 제정내용은

- 협의회는 「청렴구미 만들기」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 협력에 관한사항, 교육·홍보에 관한사항,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사항 등을 협의추진 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인사, 관계전문가는 각 2인, 지역상공인은 1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음.
-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음.
-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임.

○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 안 제10조제1항 내용중
 -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조항은 협의회도 조례에 의해 조직된 공공적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므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자료협조 요청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 안 제10조제2항 내용과 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협의회 등에서 공무원에게 자료협조 요청 등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과하는 성격의 규정이므로 안 제10조제2항 조문에 대한 존치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이며, 대외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회 명의로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분과위원회는 대외적인 의사표명권이 없는데도 협의회와 같은 자료 요청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 안 제10조제1항중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내용중 『분과위원회』의 포함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